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91
----------	------

발의년월일 : 2020년 05월 21일

발 의 자 : 전병주, 장인홍, 이호대,
양민규, 권순선, 김기덕,
권영희, 이영실, 최 선,
임종국, 황인구, 박순규,
오한아, 김정태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최근 경사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운전자의 실질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기준으로 고임목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약칭하고 있는 사항을 “안전관리실태조사”와 구분하여 “수급실태조사”로 조정하고, 수급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법상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사항이 실제로 주차장 안전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법적 안전기준 사항 추가(안 제3조1항3호의 다목).

나. 개정 대상 조문을 어문 규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하여”를 “대해”로,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를 “얕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분조사”를 “구분 조사”로 한다.

다.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포함) 충족 여부

제3조제2항 중 “실태조사”를 각각 “수급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교하여”를 “비교해”로, “공부”를 “공적 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조사를”을 “수급실태조사를”로, “실태조사원증표”를 “수급실태조사원 증표”로, “제시하여야”를 “보여 주어야”로, “유지관리해야”를 “유지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 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이하 “<u>실태조사</u>”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u>실태조사</u> 대상</p> <p style="padding-left: 2em;">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 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 는 모든 공간에 <u>대하여</u> 주 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u>아니한 공간은</u> <u>실태조사</u> 대상에서 제외한 다.</p> <p style="padding-left: 2em;">나. (생 략)</p> <p>2. <u>실태조사</u> 시기 : 연중 주차수 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 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3. <u>실태조사</u> 내용</p>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 ----- ----- ----- ----- ----- ----- “<u>수급실태조사</u>”-- -----.</p> <p>1. <u>수급실태조사</u>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 ----- <u>대해</u> ----- ----- ----- <u>않은 공간은 수급</u> <u>실태조사</u> ----- -----.</p> <p style="padding-left: 2em;">나. (현행과 같음)</p> <p>2. <u>수급실태조사</u> ----- ----- ----- ----- -----.</p> <p>3. <u>수급실태조사</u> -----</p>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4. 실태조사 방법

가. (생략)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주차장의 법적 안전기준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포함) 충족 여부

라. (현행 다목과 같음)

4. 수급실태조사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구분 조사

② ----- 수급실태조사-----

----- 수급실태조사 -----
----- 비교해 -----
----- 공
적 장부 -----

③ 수급실태조사를 ----- 수급
실태조사원증표-----
----- 보여 주어
야 -----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 유지관리하여야 -----
-----.

④ ----- 수급실태조사-----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① -----
----- 수
급실태조사-----
----- 지역을 -----

-----.

② (현행과 같음)